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838
------------	------

2022년 2월 14일
교 육 위 원 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서윤기 의원외 14명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제4차 교육위원회(2022. 2. 14.) 상정·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별 주차장 현황에 따르면, 학교 부설주차장은 통상적으로 운동장 일부 및 공터를 활용하거나 사립학교는 부지를 공유하는 같은 재단의 학교와 주차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음.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한다고 하나, 학교 자체 여건에 따라 임의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학교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교 내 교육 공간 확보,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학교 주차장”, “안전설비” 등 조례에 필요한 정의를 명시함(안 제2조)
- 다.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라. 학교 주차장의 안전한 설치·유지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 마.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를 규정함(안 제5조)
- 바.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실시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 사. 학교 주차장 설치 또는 확장·이전 시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 학교 주차장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함(안 제9조)
- 자.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개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안 제10조·안 제11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윤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38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 공간 확보와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난 회기 교통위원회 사전의결 미비를 이유로 미상정되었던 의안이 사전절차 완료로 상정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주차장법」 제2조제1호1)에 따르면 학교 주차장은 주차장 종류 중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부설주차장은 현재 「주차장법」²⁾ 및 「주차장법 시행령」³⁾에 위임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 의해 설치·관리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현행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는 부설주차장과 관련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설치제한 지역 및 기준, 부설주차장의 일반

1)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2) 「주차장법」 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용에의 제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⁴⁾.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에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⁵⁾을 제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평생학습관, 도서관)⁶⁾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운영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그 결과 학교주차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⁷⁾ 준수하고 있는 학교는 총 1,156개교⁸⁾ 중 81개교(7.0%)에 불과하며 93%(1,075개교)의 학교가 법적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⁹⁾.
-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등의 상위 법령에 따라 서울시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교육청의 관리영역 밖에 있던 학교 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표-1] 학교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설치기준 준수 여부	학교수(%)
준수	81(7.0%)
미준수	1,075(93.0%)
전체	1,156(100.0%)

4) [붙임1] 자료 참조.

5) 2014년 12월 19일,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개정함.

6) [붙임2] 자료 참조.

7)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붙임3 참조)에 따라 **학교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200㎡ 당 1대 임.**

8) 총 1,301개교 중 중·고등학교 등이 공용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학교는 1개 학교로 간주함.

9) 학교주차장의 경우 200㎡ 당 1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음. 예컨대 시 설면적이 8,825㎡ 인 A학교의 경우 설치 기준 200㎡ 당 1대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주차대수가 44대여야 하나 현재 A학교의 주차대수는 39대인바, 5대의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2] 학교급별 학교 주차장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단위: 학교수, %)

학교급별	준수	미준수	전체
초등학교	48(8.3%)	527(91.7%)	575(100.0%)
중학교	13(4.4%)	284(95.6%)	297(100.0%)
고등학교	20(7.0%)	264(93.0%)	284(100.0%)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 11조까지 학교 주차장의 설치 한도, 실태조사, 관리계획, 안전확보, 사용료 징수, 개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바, 조례 체계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7조)

- 동 조례안 제7조는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매 5년마다 학교 주차장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정책·안전기획관이 학교시설 및 학교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에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을 포함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은 주로 학생들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목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인데 반해,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은 학생의 안전 관리 이외에도 주차장 실태조사나 주차장 설치 한도, 주차장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안과 같이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에 대한 검토(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 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 사항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장이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욱이 같은 조 제3항은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 주차장의 현황, 설치한도,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같은 조 제1항의 ‘협의’는 제3항과 같이 ‘승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조 제1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4) 학교 주차장의 설치·이전 시의 이동 동선 고려 및 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

○ 안 제8조제2항은 학교 주차장의 설치 또는 확장·이전시 학교장이 학생 및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안전 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8조제2항에서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를 ‘교육활동 및 학생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 배치’를 ‘등·하교시 안전요원 배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그러나 현재 학교 주차장은 등·하교 시 교직원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학부모나 민원인의 방문도 있으며, 동 조례안 제 1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방문까지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및 보행자를 고려하고 이들을 위한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학교보안관¹⁰⁾ 및 배움터지킴이¹¹⁾ 등 학생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관리에 힘

10) 서울시 국·공립 초등학교 596개교 및 특수학교 32개교에 총 1,260명 배치

11)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

구분	학교급	초					중				고				계			
	설립별	사립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수(교)		38	2	275	107	384	3	124	172	299	5	399	317	721				
인원수		76	2	386	115	503	3	168	195	366	5	554	386	945				

을 쏟고 있으며 교내 CCTV 교체 설치 등¹²⁾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교보안관 및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교육활동시간에 근무하는 만큼 안 제11조에 따라 방과 후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인력운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주차장(시립학교에 한정)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급지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이 월단위로 주차하는 정기 주차의 경우 6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학교 주차장(시립학교) 이용시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동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의 경우 민원인 방문이 적어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차장 무료 사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속 교직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 그러나 동 조례안 제10조는 교육감이 학교 주차장 이용자에게 사용료

12) 2021년도, 학교 CCTV 교체 예산 1,535,000천원 편성

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사용요금, 사용료 부여 대상 및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등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현행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는 학교 주차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¹³⁾, 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는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한 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학교 주차장의 개방에 대한 검토(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거나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시설개방 조례’)」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에서 주차장(지하주차장 제외)을 개방하는 학교는 132개 교에 불과한 바,¹⁴⁾ 동 조례안에서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지역주민에게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한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 「서울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14) 2019년 기준(코로나19 이전)

- 그러나 안 제11조에서 개방대상으로 규정한 주차장의 경우 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는바, 교육감이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규정에서 ‘교육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의 경우 동 규정이 「시설개방 조례」와 중복되고, 사립학교의 경우 상기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동 조항을 삭제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안 제8조제1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함.
- 안 제11조의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으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38
----------	------------

제안연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 하도록 규정한 만큼 법적 체계성 및 조문의 통일성 측면에서 안 제8조제1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함.
- 동 조례안 제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공·사립)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을 ‘학교의 장’ 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할 경우 교육감과의 협이가 아닌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 주차장의 개방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에서 ‘학교의 장’ 으로 제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안 제11조 중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을 “학교의 장”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교육감과 협의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u>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u>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u>학교의 장은</u>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로 인한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
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
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설치 한도 준수여부
3. 학교별 학교 주차장 이용자 현황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및 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학교 주차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

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 여부, 학교 주차장의 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설치한도,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 제9조에 따른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 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